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종길 의원 등 7명
- 발의일자: 2023. 1. 20.(금)
- 회부일자: 2023. 1. 20.(금)
- 검토기간: 2023. 1. 25.(수) ~ 1. 27.(금)

2. 제정이유

-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나.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에 기여한 경우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빈곤, 핵가족,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혼자 임종을 맞아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적으로 고독사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40대, 50대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2,008	2,447	2,656	3,136	3,488
40세미만	63	76	81	104	76
50세미만	187	183	234	284	272
60세미만	507	557	576	673	667
60세이상	1,251	1,631	1,765	2,075	2,473

출처: 월간 노동리뷰 2022년 7월호 <표1> 부분인용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20~30대 고독사는 전체 세대의 8.4%까지 차지해 매년 200여 명의 청년이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 특히 20대와 30대의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따른 극단적 선택인 경우가 각각 56.6%와 40.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 연령대비 17.4%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고 체계부터 살피는 ‘돌봄 체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지역사회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한국사회의 사회적 고립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2016년 현재 OECD 평균 11.4%의 2배가 넘는 24.1%로 일본 10.3%의 13.8%P 높음.

OECD 주요국 사회적 고립도

(단위: %)

	2007	2010	2013	2016
한국	21.9	22.2	21.8	24.1
OECD 평균	8.3	10.6	11.7	11.4
프랑스	6.3	7.3	8.0	11.6
미국	4.5	7.4	8.5	10.1
일본	7.0	11.2	9.2	10.3

※사회적 고립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월간 노동리뷰 2022년 7월호 <표3> 부분인용

- 또한 행정안전부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현재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험성이 높은 1인 세대는 달서구 전체 세대 235,883세대 중 84,747세대로 약 3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말 현재 227,966세대 중 68,504세대 30.05%에 비해 약 5.88%P가 증가한 것으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할 책무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1인 세대의 증가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